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24호 2024. 2. 26.(월)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4-365호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고성군 공고 제2024-36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4-365호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6.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최근 고액 소송가액 사건의 증가와 승소여부가 불분명한 복잡한 사건소송이 늘어나고 있어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을 현실화하여 소송의 전문성 제고 및 승소율 향상을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가. 신청사건에 대한 착수금 증액
- 나. 심급별 본안사건 금액 구간 변경과 착수금 일부 증액
- 다. 승소사례금 지급 승소비율을 60%에서 50%로 변경
- 라. 소송 도중 소송물가액 증액 시 착수금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문구 삽입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 (055)670-2082, FAX: (055)670-20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전화: 055-670-20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소송비용등의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내용(소송물가액 기준)		기 준 액	
			착수금	승소사례금
행정 및 민사 소송	1. 신청사 건	변론이 없는 경우	100,000원	없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2. 심급별 본안사건			착수금에 승소비용 (60%이상 승소에 한하 여)을 곱한 금액.
	가. 3,000만원 미만	1,500,000원 이내		
	나.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2,000,000원 이내		
	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00,000원 이내		
	라. 1억원 이상	3,000,000원 이내		
마.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0,000원 이내			
3. 상고심 및 환송심(수임 인이 전심의 수임인과 동 일인인 경우)		전심 착수금의 1/2 이내		
기 타 소 송 비 용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4급공무원에 준한 금액 6. 기타비용 : 실액			

비고 : 1.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별표] <개정 2024. 00. 00.>

소송비용등의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내용(소송물가액 기준)	기 준 액	
		착수금	승소사례금
행정 및 민사 소송	1.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	3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없음
	2. 심급별 본안사건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5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500,000원 이내 5,000,000원 이내	착수금에 승소비 율(50%이상 승소 에 한하여)을 곱 한 금액.
	3.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0,000원 이내	
	4. 상고심 및 환송심(수임인이 전심의 수임인과 동일인인 경우)	전심 착수금의 1/2 이내	
기타 소송 비용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4급공무원에 준한 금액 6. 기타비용 : 실액		

※ 비고

1.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소송 도중 청구취지 변경 등으로 소송물가액이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착수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4-36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하는데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6.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정책 환경 변화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의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23. 5. 16. 공포 / ‘24. 5. 17. 시행) 및 이와 연계된 법률이 동시 시행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의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 조문을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일에 맞추어 일괄개정 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 문맥상 의미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 (055)670-2083, FAX: (055)670-20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전화: 055-670-20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

제3조(「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를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를 “국가무형유산의” 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 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3조 중 “국가무형문화재” 를 “국가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가무형문화재” 를 각각 “국가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5조 중 “국가무형문화재” 를 “국가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무형문화재” 를 “국가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6조(「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을 각각 “국가유산을” 로 한다.

제7조(「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가” 를 “국가유산이” 로 한다.

제8조(「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한다.

제9조(「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한다.

제10조(「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1조(「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표 제1호바목 중 “공원/관광/문화재안내”를 “공원/관광/국가유산안내”로 한다.

제12조(「고성군계획 조례」의 개정)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13조(「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0.00.00.>

열 략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성별	남/여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비고	
열람일시	년 월 일					
열람인원	본인 외()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	연번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1		남/여		
		2		남/여		
		3		남/여		
열람목적	<input type="checkbox"/> 학술논문 <input type="checkbox"/> 학위논문 <input type="checkbox"/> 연구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p>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고성군수 귀하</p>						
구비서류	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전시소장품 열람 조건

1. 허가 대상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 할 때
-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2. 제한 대상

-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열람 시 준수사항

-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p>1. ~ 10. (생 략)</p> <p>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p> <p>12. · 13. (생 략)</p>	<p>제19조(답례품의 종류) ①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p> <p>12. · 13. (현행과 같음)</p>

제2조(「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u>문화재보호구역안</u>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4조(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u>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으</u> <u>로</u> ----- ----- ----- <u>경상남도</u> <u>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안</u>----- -----.</p>

제3조(「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시 6. (생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국가유산</u> ---- ----- 6. (현행과 같음)

제4조(「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동등재추진단) ①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문화재청장</u>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공동등재추진단) ① ---- ----- ----- ----- <u>국가유산청장</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가무형 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설치한 고성군 <u>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국가무형 유산</u>의 ----- ----- 「<u>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 ----- ----- <u>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수교육관”이란 <u>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생략)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u>----- ----- ----- -----. 2. (현행과 같음)
<p>제3조(위치) 고성군 <u>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이하“전수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571과 고성군 상리면</p>	<p>제3조(위치) ----- <u>국가무형유산</u> ----- ----- ----- -----</p>

척번정7길 26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5. (생략)

제5조(운영) 군수는 전수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시물의 확보 등) 군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

제4조(업무 및 기능) -----
-----.

1. 국가무형유산 -----

--
2. 국가무형유산 -----

3. 국가무형유산-----

4. 5.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
----- 국가무형유산 -----

-----.

제6조(전시물의 확보 등) -----
국가무형유산-----

-----.

제8조(위탁 운영) ① -----

제7조(「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지원대상은 민간관광시설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생 략)</p> <p>2. 고성군 대표축제가 개최되거나 <u>문화재</u>가 있는 지역 또는 연 1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과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일 것</p> <p>② (생 략)</p>	<p>제25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국가유산</u>이 ----- -----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8조(「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생 략)</p> <p>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u>문화재</u>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국가유산</u>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9조(「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의 화재, 붕괴, 폭발 5. ~ 10. (생략) ③ (생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국가유산</u> ----- 5.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생략) ②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u>문화재보호법</u> 」에 의한 <u>문화재</u> 및 <u>문화재보호구역</u> 과 「 <u>자연환경보전법</u> 」에 의한 <u>생태·경관보전지역</u> 2. ~ 16. (생략)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문화유산</u> 및 <u>문화유산보호구역</u> ----- ----- 2. ~ 16. (현행과 같음)

3. (생략)

⑤ ~ ⑦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성공용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d colspan="9">열람허가신청서</td> <td colspan="1">차량</td> </tr> <tr> <td colspan="9"></td> <td colspan="1">즉시</td> </tr> <tr> <td>신청인</td> <td>성명</td> <td colspan="3"></td> <td>성별</td> <td>남/여</td> <td colspan="2">전화번호</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주소</td> <td colspan="3"></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등록번호</td> <td colspan="3">명칭</td> <td colspan="2">수량</td> <td colspan="2">비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10">열람일시</td> <td colspan="10">년 월 일</td> </tr> <tr> <td rowspan="3">열람인원</td> <td rowspan="3">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td> <td>연번</td> <td>성명</td> <td>성별</td> <td>전화번호</td> <td colspan="5">주소</td> </tr> <tr> <td>1</td> <td></td> <td>남/여</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2</td> <td></td> <td>남/여</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 colspan="10">열람목적</td> <td colspan="10"> <input type="checkbox"/>학술논문 <input type="checkbox"/>학위논문 <input type="checkbox"/>연구자료 <input type="checkbox"/>기타 () </td> </tr> <tr> <td colspan="10"> <p>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td> <td colspan="10"> <p>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td> </tr> <tr> <td colspan="10">고성군수 귀하</td> <td colspan="10">고성군수 귀하</td> </tr> <tr> <td colspan="10">구비서류</td> <td colspan="10"> 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td> </tr> <tr> <td colspan="10"> <p>전시소장품 열람 조건</p> <p>1. 허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p>2. 제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p>3. 열람 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td> <td colspan="10"> <p>전시소장품 열람 조건</p> <p>1. 허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p>2. 제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p>3. 열람 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td> </tr> </table>										열람허가신청서									차량										즉시	신청인	성명				성별	남/여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비고					열람일시										년 월 일										열람인원	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	연번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1		남/여							2		남/여							열람목적										<input type="checkbox"/> 학술논문 <input type="checkbox"/> 학위논문 <input type="checkbox"/> 연구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										<p>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p>전시소장품 열람 조건</p> <p>1. 허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p>2. 제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p>3. 열람 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p>전시소장품 열람 조건</p> <p>1. 허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p>2. 제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p>3. 열람 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열람허가신청서									차량																																																																																																																																																																																																										
									즉시																																																																																																																																																																																																										
신청인	성명				성별	남/여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비고																																																																																																																																																																																																													
열람일시										년 월 일																																																																																																																																																																																																									
열람인원	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	연번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1		남/여																																																																																																																																																																																																															
		2		남/여																																																																																																																																																																																																															
열람목적										<input type="checkbox"/> 학술논문 <input type="checkbox"/> 학위논문 <input type="checkbox"/> 연구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																																																																																																																																																																																																									
<p>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p>전시소장품 열람 조건</p> <p>1. 허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p>2. 제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p>3. 열람 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p>전시소장품 열람 조건</p> <p>1. 허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p>2. 제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p>3. 열람 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